

【문 1】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A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승용차로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위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구성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 ㉡ A는 혈중알콜농도 0.112%의 음주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결과적가중범에 해당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이에 흡수된다.
- ㉢ A는 피해자의 방안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그 전체가 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죄를 구성할 뿐이지, 그 중 주거침입의 행위가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 ㉣ 건물의 방화행위를 하던 집단 중 1인이 건물 내의 피해자에게 화염병을 던져 화상을 입힌 경우, 공모에 참여한 집단원 모두가 현준건조물방화치상상의 죄책을 진다.
- ㉤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준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준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8조의 처벌례에 따르면 된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문 2】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가증권위조·변조죄에 관한 형법 제214조 제1항과 달리 수표위조·변조에 의한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위반죄의 성립에는 ‘행사할 목적’이 요구되지 않는다.
- ②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 ③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하였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타에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에 위조유가증권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유가증권의 내용 중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에도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
- ⑤ 약속어음의 위조는 적어도 행사할 목적으로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된 것이라면 그 발행명의인이 가령 실재하지 않은 사자 또는 허무인이라 하더라도 그 위조죄가 성립된다.

【문 3】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피고인은 ① 1981. 9. 10.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 ② 1984. 7. 9.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③ 1986. 7. 10. 절도죄로 징역 1년, ④ 1997. 6. 7.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⑤ 2001. 4. 27. 특가법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⑥ 2006. 7. 19. 특가법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8. 25.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다음 2010. 2. 11.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은 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5항 소정의 ‘징역형을 세 번 이상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
- ㉡ 피고인은 2008. 11.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전과 이전에 저지른 범죄사실로 인하여 2007. 5.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 결과 2008. 7. 22. 정식재판절차에 회부되었으며 위 재판결과 2009. 12. 24.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다. 위 확정판결의 전과는 위 공동상해의 범행 이후에 행한 범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위 공동상해의 범행 당시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었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피고인의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 등을 이유로 이미 위 집행유예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상태라면, 이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집행유예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 ㉣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제1심보다 감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제1심보다 더 길어졌고 그 기간이 선택형인 징역형의 장기를 초과한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4】 다음 중 현행 형법상 처벌되는 범죄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기차전복예비방조죄
- ㉡ 전시군수계약이행방해미수죄
- ㉢ 상습판매목적아편흡식기소지죄
- ㉣ 동의낙태치상죄
- ㉤ 편의시설부정이용미수죄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문 5】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형법 제152조 제1항에서 정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라 함은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한 선서를 한 증인’이라는 의미이고, 그 증인 신문은 법률이 정한 절차 조항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민사소송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이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서를 하고 허위의 증언을 한 경우, 허위진술한 증인에 대하여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담뱃갑의 표면에 그 담배의 제조회사와 담배의 종류를 구별·확인할 수 있는 특유의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그 담뱃갑은 그 담뱃갑 안에 들어 있는 담배가 특정 제조회사가 제조한 특정한 종류의 담배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담뱃갑은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한다.
- ㉢ A는 위조한 전문건설업등록증 등의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공사 수주에 사용하기 위하여 발주자인 甲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甲은 A로부터 이메일로 송부받은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였고, 당시 그 이미지 파일이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우 A의 행위는 甲에 대하여 형법 제229조의 위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
- ㉣ 형법 제207조 통화위조죄에서 정한 ‘행사할 목적’이란 유가증권위조의 경우와 달리 위조·변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였다는 목적을 말하므로,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의 객체인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6】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형법 제62조 제2항에서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행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 ㉡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당연히 형이 실효한다.
- ㉢ 형의 집행종료 후 7년 이내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7년을 채우더라도 형법 제81조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의 실효를 선고할 수 없다.
- ㉣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다.
- ㉤ 형의 시효의 정지사유는 형집행의 유예, 정지, 가석방, 수형자 체포, 기타 천재지변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7】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인감증명서는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므로, 인감증명서를 편취하는 경우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
- ㉡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 ㉢ 피고인은 甲이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잘못 송금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과 송금인 사이에 거래관계가 있었던 경우는 횡령죄가, 피고인과 송금인 사이에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던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각 성립한다.
- ㉣ 타인을 위하여 금전 등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과다지급된 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공사업자로부터 되돌려받는 행위는 그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에 해당한다.
- ㉤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호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8】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바로 접하여 있고, 도로에서 주거용 건물, 축사 4동 및 비닐하우스 2동으로 이루어진 시설로 들어가는 입구 등에 그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나 담 기타 인적·물적 설비가 없고 노폭 5m 정도의 통로를 통하여 누구나 축사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경우, 차를 몰고 위 통로로 진입하여 축사 앞 공터까지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 ㉡ A, B는 2009. 4. 22. 12:00경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甲의 ○○아파트에 이르러, 육각렌치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위 아파트 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다가 마침 귀가하던 甲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 경우 A, B는 공동주거침입의 죄책 및 특수절도미수의 죄책을 지고 위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 다세대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 ㉣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 ㉤ 수일 전에 2차레에 걸쳐 甲을 강간하였던 A가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보기만 하였던 경우에는 A의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9】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때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계로 인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는 채권에 관하여는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후에는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은닉 등의 행위를 하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한다.
- ㉣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3개월 후에 실제로 위 강제집행에 따른 추심금을 수령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는 위 추심금을 수령한 때에 범죄행위가 종료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 ㉤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문10】 다음 중 절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A가 피해 회사의 연구개발실에서 그곳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 회사의 직물원단고무코팅시스템의 설계도면을 A2 용지에 2장 출력하여 가지고 나온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 ② B가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권이 있는 피해자의 조개양식장에서 원래 그 양식장 지역에서 자연 번식한 모시조개를 채취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 ③ C가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농협 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예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다시 위 통장을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위 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통장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D가 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형법 제330조 소정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⑤ E가 자신의 모친 甲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甲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 몰래 가져갔더라도 위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이상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문11】 장물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장물’이라 함은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본범의 범죄행위가 우리 형법에 비추어 절도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본범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이에 의하여 영득된 재물은 장물에 해당한다.
- ㉡ A는 甲, 乙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귀금속을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는 위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 요구를 수락하고 위 귀금속을 매수하기로 한 丙에게 전화하여 ○○노래방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A는 甲, 乙로부터 건네받은 귀금속을 가지고 ○○노래방에 들어갔다가 丙을 만나기 전에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 경우, A의 알선에 의하여 실제로 장물의 취득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장물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예금계좌로 함께 2억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자신의 예금액을 증액시킴으로써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을 저지른 다음 자신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6천만원을 인출한 경우, 위 현금인출행위는 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불가벌적사후행위가 되고,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위 6천만원을 인출한 행위는 장물취득죄에 해당한다.
- ㉣ 피고인은 甲으로부터 장물인 고려청자 1점을 매각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데 당시 위 고려청자가 장물인 점을 짐작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고려청자를 보관하던 중 乙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이 위 고려청자를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장물보관죄의 가벌적 평가에 포함되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A는 甲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甲이 습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신용카드들로 물품을 구입하여 주기로 하고 위 신용카드들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위 신용카드를 甲이 절취한 것이었다. 이 경우 A를 장물취득죄로 처벌할 수 없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문12】 다음 중 현행 형법상 친고죄는 모두 몇 개인가?

- |            |                 |
|------------|-----------------|
| ㉠ 외국국기모독죄  | ㉡ 존속폭행죄         |
| ㉢ 피구금부녀간음죄 | ㉣ 업무상비밀누설죄      |
| ㉤ 과실치상죄    |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 ㉦ 준강제추행죄   | ㉧ 추행목적약취죄       |
| ㉨ 존속학대죄    |                 |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13】 공갈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폭력조직의 두목 또는 조직원이 자신들을 소재로 삼은 영화에 제작투자한 피해자들에게 영화감독 B를 통해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해약을 고지받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영화의 소재가 된 폭력조직의 두목 또는 조직원이므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을 두려워하거나 곤경에 빠진 영화감독 B를 위해서라도 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마지못해 돈을 준 경우, 폭력조직의 두목 또는 조직원의 행위는 공갈죄를 구성한다.
- ②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공갈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 ③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 ④ 피고인은甲의 지시를 받아 그 소유의 돈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는데,乙이 이를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다. 피고인은甲의 지시로乙에게 겁을 주어乙로부터 쇼핑백 등에 들어 있던 절취된 돈을 교부받았다. 이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죄를 구성한다.
- ⑤ A는乙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간 후 최초의 장소에 이르러 택시에서 내린 다음 택시요금 14,000원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택시를 승차할 때 다른 장소에 가자고 하였다면서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는乙을 때리고 달아났다.乙은 A가 말한 다른 장소까지 쫓아가 기다리다가 그곳에서 A를 발견하고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A는 다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달아났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공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문14】 다음 중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만 묶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버린 경우
- ㉡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특정단체의 회원들이 재판장이 거주하는 아파트 벽면에 계란 30개를 투척하여 건물 벽이 더럽혀진 경우
- ㉢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차용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은행에 보관시킨 약속어음을 은행지점장이 발행인의 부탁을 받고 그 지급기일란의 일자를 지운 경우
- ㉣ 음주운전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은 피의자가 자기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술서를 잠시 돌려받아 이를 찢어버린 경우
- ㉤ 쪽파의 매수인이 명인방법을 갖추기 전에 매도인의 승낙을 받은 자가 쪽파를 파헤쳐 훼손한 경우

- ① ㉠, ㉡, ㉢
- ② ㉠, ㉢, ㉤
- ③ ㉢, ㉣
- ④ ㉡, ㉢, ㉤
- ⑤ ㉡, ㉣

【문15】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 직책으로 대외적 영업 활동을 하여 그 활동 및 계약 등을 피해자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에 귀속된 금형제작·납품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금형제작물량 중 50%는 피고인이 운영하던甲 주식회사에서, 나머지 50%는 피해자 회사에서 제작하여 그 수익을 1/2씩 나누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고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피고인이 별도로 설립한乙 주식회사 명의로 5회에 걸쳐 합계 2억원의 금형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납품대금으로 합계 1억원을 수령하였는데, 나머지 계약대금은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액은 피고인이 실제로 수령한 1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 받지 못하게 되는 나머지 계약대금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손해액으로 고려할 것이 아니다.
- ㉡甲이乙의 자금 지원 등을 통해丙 주식회사를 인수한 다음乙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丙 회사로 하여금 별다른 반대급부도 받지 않고丁 주식회사의乙에 대한 금전채무와 그 담보 목적으로丁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하였는데,甲은 그 후乙이 위 연대보증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丙 회사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乙과 체결하여乙이丙 회사로부터 약속어음금을 추심하도록 함으로써丙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위 약속어음채무 연대보증행위나 이의부제기 약정 등이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甲과乙은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
- ㉢ 동일한 대출한도 초과대출 행위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가 모두 성립한 경우, 위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甲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주식의 실질가치에 미달하는 금액만을 받고 신주를 발행해 준 사안에서,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죄는 위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공소시효도 위 계약체결시부터 진행한다.
- ㉤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채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채죄와 관련하여, 증채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채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다.

- ① ㉠,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문16】 다음 중 형법에서 '위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만 모두 묶은 것은?

- ㉠ 입찰방해죄
- ㉡ 신용훼손죄
- ㉢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 ㉣ 권리행사방해죄
- ㉤ 업무방해죄
-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 ㉦ 강제집행면탈죄
-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형 법 40문】

## ①책형

【문17】 무고죄에 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A는 甲이 변제의사와 능력도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하면서,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대여의 일시·장소도 사실과 달리 기재하였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한다.
- ㉡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하는 ‘징계처분’에 포함되고, 그 징계 개시의 신청권이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포함된다.
- ㉢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 수표발행인인 A는 은행에 지급제시된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신고를 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함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었다. A는 경찰에 출석하여 수표위조자로 특정인을 지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 경우, 수사기관에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A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
- ㉤ A는 甲과 그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의 합의를 주선하기 위하여 자신도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甲의 승낙을 받고 甲으로부터 차용금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후 A는 바로 甲에게 합의서를 작성해주는 한편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위 고소사건은 고소장 각하로 종결되었다. 이 경우 A에 대하여 무고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문18】 자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
- ② 자수서를 소지하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으나 자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도 부인하였고, 그 이후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행사실을 시인한 것을 자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③ 피고인이 검찰에 자진출석하여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그 후 검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경우에는 자수라고 볼 수 없다.
- ④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자수시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범행발각이나 지명수배 여부와 관계없이 체포 전에만 자수하면 자수에 해당한다.

【문19】 형법의 시적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1개의 죄가 본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본법 시행 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신·구형법 사이의 관계가 아닌 다른 법률 사이의 관계에서는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 ㉡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란주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던 보건복지부 고시가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되어 그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됨으로써 그 후로는 영업시간제한 위반행위를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 ㉢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수차 법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그중 가장 형이 경한 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 체포, 감금 등 계속범의 실행행위 중 법률의 변경이 있으면 행위시법의 원칙에 따라 신법이 적용된다.
- ㉤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여도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20】 간접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사람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②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허위보증서작성죄의 주체는 작성명의인인 보증인에 한정되기 때문에, 보증인이 아닌 자는 허위보증서 작성의 고의 없는 보증인들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 보증서 작성의 범행을 범할 수 없다.
- ③ 甲이 존재하지 않는 약정이자에 관한 내용을 부가하여 위조한 乙 명의 차용증을 바탕으로 乙에 대한 차용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한 사안에서, 甲의 행위는 丙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를 구성한다.
- ④ 간접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그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해당하는 형법 제30조를 적용한 경우, 그 판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⑤ 범죄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하여서도 이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내란죄의 경우에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다.

# 【형 법 40문】

# ①책형

【문21】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알선의뢰인이 알선수제자에게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에 터잡아 급여의 형식으로 지급한 경우에, 명목상 급여액에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알선수제자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
- ㉡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 등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일 뿐, 그 이전에 범해진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할 수 없다.
- ㉢ 피고인은 공무원인 甲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1억 원을 교부하였는데, 甲은 피고인의 범행을 폭로하는 데 증거로 활용하겠다는 의사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수수받았으며, 위 1억원은 압수되었다. 이 경우 甲은 피고인에 대하여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고, 압수된 1억 원이 甲의 소유인 이상 이를 몰수할 수 있다.
- ㉣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한 다음 이를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위 승용차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므로 이를 몰수할 수 있다.
- ㉤ 몰수대상 물건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압수된 경우에는 이를 몰수할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22】 쟁의행위와 정당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인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이를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 (b)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게 대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거한 경우, 그 공간의 점거가 사용자에게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면, 위 제3자의 승낙 여부에 상관없이 이는 정당행위이므로 사용자와 제3자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c)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이다.
- (d)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라도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므로, 그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임금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 (e) 노동조합원의 찬·반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행위로서 사용자에게 대한 업무방해죄의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23】 대항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 매도, 매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항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의 매도행위는 그와 대항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매수범행에 대하여 공범이나 방조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b)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측에서 뇌물을 받아들이는 행위(부작위 포함)로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 한다.
- (c) 각 가담자에 대해 동일한 법정형이 부과되는 범죄로는 간통죄, 도박죄, 아동학사죄, 부녀매매죄, 배임수·중재죄 등이 있다.
- (d) 세무사의 사무직원으로부터 그가 직무상 보관하고 있던 임대사업자 등의 인적사항, 사업자소재지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받은 행위는 세무사법상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 (e)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24】 다음 중 중지미수는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 피고인이 甲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甲이 그 입금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여 甲과 함께 은행에 가던 중 은행 입구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 (b)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은 지났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
- (c)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복부를 주방용 가위로 힘껏 찔렀으나 피해자가 입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놀란 나머지 범행현장에서 자고 있던 甲을 깨워서 甲으로 하여금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게 하고 피고인은 체포될 것이 두려워서 도망을 친 경우
- (d)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다음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로 집에까지 데려다 준 경우
- (e)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 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 둔 경우
- (f) 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가등기하였다가 그 가등기를 말소한 경우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 【형 법 40문】

## ①책형

【문25】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있어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임을 요한다.
- (b) 피해자를 위협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1회 간음하고 2백미터쯤 오다가 다시 1회 간음한 경우, 2회의 간음으로 인한 강간은 단순일죄이다.
- (c)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여자 혼자 있는 방문 앞에서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갈 듯한 기세로 방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창문에 걸터 앉아 가까이 오면 뛰어 내리겠다고 하는데도 배란다를 통하여 창문으로 침입하려고 한 행위에는 강간의 착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d)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 (e)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하였다 하더라도 강간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폭행이나 협박죄가 성립할 뿐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26】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의 의함)

- (a)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 (b) 통상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공전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기사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c)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 들어와서 잘 운영되어 가는 여촌계를 파괴하려는데 주민들은 이에 동조 현혹되지 말라"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 (d)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되고,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된다.
- (e)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2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용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중 '위험한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 견인료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직원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폭행한 경우, 그 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 (b) 피고인이甲과 운전 중 발생한 시비로 한차례 다툼이 벌어진 직후 甲이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를 뒤따라온다고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甲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자동차를 정차한 후 4 내지 5m 후 진하여 甲이 승차하고 있던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그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 (c)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 2대를 손괴한 경우, 그 자동차의 소유자 등이 실제로 해를 입거나 해를 입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d) 피고인이 이혼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승낙 없이 자동차에 태우고 떠나려고 하는 피해자들 일행을 상대로 급하게 추격 또는 제지하는 과정에서 소형승용차(라노스)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 범행은 소형승용차(라노스)로 중형승용차(쏘나타)를 충격한 것이며, 충격할 당시 두 차량 모두 정차하여 있다가 막 출발하는 상태로서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상대방 차량의 손괴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자동차의 충격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을 경우, 상해 및 손괴행위에 있어 그 소형승용차(라노스)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e) 청산염 2그램 정도를 협박편지에 동봉 우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였다면 이는 우체부를 통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28】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행위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 (b)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한다.
- (c)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양 죄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 (d) 뇌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함으로써 그 행위가 여러 개이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적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동일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 (e) 강도가 시간적으로 접촉된 상황에서 가족을 이루는 수인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집안에 있는 재물을 탈취한 경우 그 재물은 가족의 공동점유 아래 있는 것으로서, 이를 탈취하는 행위는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불구하고 단일한 강도죄의 죄책을 진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 【형 법 40문】

## ①책형

【문29】 범인은닉·도피죄, 증거인멸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 (b) 다만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면 공범종속성의 원칙상 범인도피교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c) 범인은닉·도피죄에서 ‘죄를 범한 자’라 함은 진범임을 요한다.
- (d)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 (e)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f)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법정에서 범죄 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0】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 ㉡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반드시 상대방 측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돈을 수수하였다면 항상 수뢰죄가 성립한다.
- ㉣ 회사의 이사 등이 보관 중인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 뇌물공여죄와는 별도로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건설회사와 컨설팅회사 간의 용역계약을 가장하여 건설회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건설회사들이 형식적인 용역계약의 상대방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등 컨설팅회사의 계좌로 뇌물을 입금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을 형법 제129조 제1항 소정의 뇌물수수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 ㉥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증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 ① ㉠, ㉡, ㉢, ㉣                      ② ㉠, ㉡, ㉣, ㉥                      ③ ㉠, ㉡, ㉣  
④ ㉡, ㉢, ㉣, ㉥                      ⑤ ㉠, ㉡, ㉣, ㉥

【문31】 형법상 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10세)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미끄러지기를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건다가 피해자가 물에 빠지자 그를 구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의사하게 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이나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 ㉢ 법원의 입찰사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 A가 자신이 맡고 있는 입찰사건의 입찰보증금이 다른 공무원 B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횡령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고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B의 횡령행위를 방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하였다면, A를 업무상횡령의 종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 부작위범에 있어서 보증인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 ㉤ 모텔 방에 투숙하여 담배를 피운 후 재떨이에 담배를 끄게 되었으나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고 잠을 잔 과실로,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시트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이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면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① ㉠, ㉡, ㉢                      ② ㉢, ㉣, ㉤                      ③ ㉣, ㉤  
④ ㉠                      ⑤ 없음

【문32】 간통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1개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하면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다른 모든 간통행위에도 효력이 미친다.
- ㉡ 간통 고소 이후 이혼사건에서 형사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고소를 취소하지 않았다면, 고소인이 간통에 대한 고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이혼소송의 제기과 함께 간통고소를 하였으나 이혼소송의 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간통에 대하여 재고소할 수 있다.
- ㉣ 간통죄의 고소 이후 이혼 등 청구의 소가 계속 중인 혼인 당사자인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동침한 사실이 있었더라도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간통행위를 유서(有恕)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여 간통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그 간통죄를 범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인 경우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그 외국인 배우자는 고소권이 없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문33】상당인과관계와 관련이 있는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면 그 자살행위가 바로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강간을 한 피고인을 강간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 ㉡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가 술집에 나가 일을 하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안방에 피해자를 감금한 후 옷을 벗기고 가위로 모발을 자르는 등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인터넷을 받으며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안방 창문을 통하여 아파트 아래 잔디밭에 뛰어내리다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은 중감금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 ㉢ 피고인은 피해자와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자 도박 일행 2명과 후배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한 후 마대자루 등을 든 후배 3명이 도착하자 피고인도 주방의 식칼을 집어들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안방 출입문을 잠그고 완강히 버티다가 피고인이 큰 소리로 위협하면서 문틈으로 식칼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풀려고 하고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차서 결국 그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이 방 창문을 통해 베란다로 피신한 다음 베란다 창문을 통해 주택 아래로 뛰어내리다가 중상을 입은 경우 피고인은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피고인 甲은 화장실을 지키고, 피고인 乙은 당구치는 기구로 문을 내려쳐 부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경우 피고인들에 대하여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 ① 없음                      ② ㉠                      ③ ㉠, ㉡  
④ ㉠, ㉡, ㉢                ⑤ ㉠, ㉡, ㉢, ㉣

【문34】준강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실행의 착수 이전에 발각되어 체포를 면탈하고자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단순 주거침입죄와 폭행죄의 경합범만이 성립한다.
- ②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흥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흥기를 휴대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
- ③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④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⑤ 절도범이 피해자의 집에서 절도범행을 마친 지 10분 가량 지나 피해자의 집에서 200m 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35】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 ②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 ③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라도 곧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가처분신청 시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⑤ 범죄행위로 인하여 강제출국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외국 주재 한국영사관 담당직원에게 허위의 호구부 및 외국인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사증 및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청을 수리한 경우라도 이는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문36】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형벌불소급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 국내에서 출생한 소가 그 출생지 외의 지역에서 사육되다가 도축되었는데, 당해 소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사육되면 비로소 그 사육지 등을 원산지표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더라도 특정 지역에서 2개월밖에 사육되지 않은 소의 경우 그 쇠고기에 해당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그 원산지표시하여 판매하였다면 이를 원산지표시 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변조나 위조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이고, 그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원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은 아니다.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여는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 【형 법 40문】

## ①책형

【문37】 업무상과실치상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 ②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
- ③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일반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 ④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신생아가 출생 후 10일 이상이 경과하도록 계속하여 수유량 및 체중이 지나치게 감소하고 잦은 설사 등의 이상증세를 보이자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관리를 맡은 책임자가 산모에게 신생아의 이상증세를 즉시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구하여 산모의 지시를 따랐다면, 신생아가 의사나 한의사 등의 진찰을 받지 못하여 탈수 내지 괴사성 장염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생아 사망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책임을 지지는 아니한다.
- ⑤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

【문38】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A가 2009. 5. 20. 22:15경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안에 있는 건축자재 등을 훔칠 생각으로 공범과 함께 위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하여 신축 중인 아파트의 지하실 안쪽을 살핀 행위는 위 지하실에 놓여 있던 동파이프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주간에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 피해자 소유 자동차 안에 들어 있는 명크코트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A는 위 차 옆에서 망을 보고 B는 위 차 오른쪽 앞문을 열려고 앞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경우,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甲과 단둘이서 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甲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乙 및 丙 소유에 속하게 된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위 아파트에서 가지고 나온 경우, 피고인은 절도죄의 기수의 죄책을 지게 된다.
- ㉤ A가 2010. 6. 16. 15:4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가 평소 비어 있는 객실의 문을 열어둔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 202호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경우,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⑤ 5개

【문39】 형법상 폭발물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평시에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자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 ㉡ 대법원은 화염병은 형법 제119조 소정의 폭발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 ㉢ 형법상의 폭발물사용죄는 예비와 음모한 자뿐만 아니라 선동한 자도 처벌한다.
- ㉣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폭발물사용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 피고인이 자신이 제작한 폭발물을 배낭에 담아 고속버스터미널 등의 물품보관함 안에 넣어 두고 폭발하게 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작한 물건의 구조, 그것이 설치된 장소 및 폭발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위 물건이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을 경미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정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잠재적 위험성에 비추어 형법 제119조 제1항에 규정된 ‘폭발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⑤ 5개

【문40】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이른바 보통예금의 경우,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 ③ A가 B에게서 돈을 차용하면서 A 소유의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 후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A는 담보물인 골프회원권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관리할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B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 ④ 음식점의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양도인의 이중양도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 토지의 매도인은 토지거래허가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이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한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면 최초 매수인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

2013년 8월 24일 시행

# 제3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 제1차시험

문제책형

②

시험과목

헌법(40문), 민법(40문), 형법(40문)

### 용 시 자 준 수 사 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문제내용에 관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책을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13. 8. 24.(토) 15:00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 시험자료실]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 : 2013. 8. 26.(월) 12:00 ~ 2013. 8. 28.(수) 17:00  
방법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 질의응답 / 정답이의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13. 9. 10.(화) 12:00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 시험자료실]에 게시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 원 행 정 처